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직원 성희롱 고충사건 특정감사 결과보고

2016. 10.

 감 사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대상 현황.....	2
1. 감사대상자 인적 사항.....	2
2. 내부직원 성희롱 고충사건 발생 경위.....	3
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3
III. 감사결과.....	4
1. 성희롱 고충사건(접수번호 1)에 관한 사항.....	4
2. 성희롱 고충사건(접수번호 2)에 관한 사항.....	6
3. 감사자 의견.....	10
4.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10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실로부터 2016. 6. 25.(토)과 같은 해 6. 30.(목)에 발생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당직원의 징계요구¹⁾가 있었다.

이에 성희롱사건에 대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대상

이번 감사는 본사 LX○○□□ ○○단 연구직 4급 박○○(이하‘피진정인’이라 한다), ○○□□□□원 ㄱㅌㅈㅂㅇㄱ실 보조인력 유○○(퇴사, 이하 ‘진정인1’이라 한다), ○○□□□□원 ㄱㅌㅈㅂㅇㄱ실 보조인력 이○○(이하 ‘진정인2’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직원 간 성희롱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를 방문·면담하여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실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ㄱㄱ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을 외부감사관으로 선임²⁾하여 2016. 8. 31.(수) 14:00부터 21:00까지 □□□□이스 ○○타운점(서울특별시 ㄹㄹ구 ㄹㄹ대로 74-* ㅎ빌딩)에서 ○○□□□□원 고충상담원(공간정보 표준 지원센터 연구직 4급 이□□)을 참관하게 하고,

1) ○○□□실-6295(2016. 8. 18.) 임직원행동강령 관련 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2) 감사실-3657(2016.08.26.): 특정감사(직원 성희롱 고충사건) 실시에 따른 외부 전문위원 운영

진정인 2명과 문답을 통해 진정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16. 9. 1.부터 같은 해 9. 5.까지 3일간 감사인 2명을 투입하여 본사 2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을 조사하였고, 감사실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6. 10. 4.(화)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현황

1. 감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속: LX○○□□ ○○단
- 성명: 박○○(800824-1*****)
- 직급: 연구직 4급
- 임용일: 2015. 7. 6.
- 현 직급일: 2015. 7. 6.
- 징계처벌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표창사항: 2016. 5. 13. 표창장(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주요 발령사항
 - ▶ 2015. 7. 6. ○○□□□□원 기트즈비실 근무를 명함
 - ▶ 2016. 1. 4. LX○○□□ ○○단 겸무를 명함

2. 내부직원 성희롱 고충사건 발생 경위

- 2016. 6. 25.(토) 진정인1과 피진정인의 식사 자리에서 사건 발생
- 2016. 6. 30.(목) 진정인2와 피진정인의 식사 자리에서 사건 발생
- 2016. 7. 28.(목) 진정인1이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원
 ΓΤΖΒ실장(연구직 3급 강○○)과 면담 중 6월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인2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함
- 2016. 7. 29.(금) ○○□□□□원 ΓΤΖΒ실장이 면담내용을 ○○□□
 □□원장에게 보고
- 2016. 8. 1.(월) ○○□□□□원장이 진정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화
- 2016. 8. 4.(목) e-메일(진정인1) 및 서면(진정인2)으로 개인별 고충
 사건 접수신청서 및 경위서를 접수

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가. 일 시: 2016. 8. 17.(수) 14:00 ~ 16:00

나. 장 소: 본사 5층 회의실

다. 참 석 자: (위원장) 권○○, (외부위원) 황○○³⁾, 송○○⁴⁾, (내부위원) 홍○○, 김
○○, 강○○, (간사) 전○○, (고충상담원) 최○○, 이○○, 김○○

라. 심의결과

- 성희롱 성립(6명), 불성립(0명)으로 본 안건 성희롱 “성립” (만장일

3) (사)□□□□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4) 한국○○○○교육진흥원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위촉강사

치)

- 피진정인에 대하여 해당부서 “**징계요구**”
- 진정인의 요청 시 기관 간 인사이동 조치 및 해당기관(전 직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피진정인은 전문기관을 통한 성희롱관련 교육 이수 후 해당부서에 결과 보고

Ⅲ

감사결과

1. 성희롱 고충사건(접수번호 1)에 관한 사항

가. 감사초점

- 언어적 성희롱 사실 존재 확인
- 신체적 성희롱 사실 존재 확인

나. 관련 규정

-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에 따른 성희롱 금지
-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른 징계사유
- 「징계규칙」 제8조에 따른 징계의 양정

다. 조사결과

1) 본인 진술

- (진정인1과 식사를 하게 된 경위) ○○□□□□원에 근무하는 김○○ 과장의 축의금을 진정인1이 대신 전달해주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 (사건 경위) ○○□□□□원 내에서도 진정인1과는 다른 부서에 있었고 현재에도 소속기관이 달라 업무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상태이며 사적으로만 친하게 지내는 동료사이로 식사 중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대화 중 포함된 성적 내용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묻고 대답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오랜 시간 동안의 술자리로 친밀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에 진정인1의 손을 잡고 “그립감이 좋다”고 하였으나 진정인1이 거절하여 즉시 철회하였다.

2) 언어적 성희롱 사실 존재

- 피진정인은 2016. 6. 25.(토) 21:00부터 다음 날 약 00:20까지 진정인1과 ○○ 신시가지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식사를 하였다.
- 피진정인은 식사 중 여자 친구가 보내온 카카오톡을 진정인1에게 보여주며, 여자 친구와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여자 친구와 두 달 동안 헤어졌을 때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의 성관계를 상세하게 묘사⁵⁾하였고
- 진정인1에게 “너는 섹스를 못하는 기간 동안 생각나는 남자가 있느냐? 만났던 남자들의 순위가 있지 않냐. 나는 학교 강의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적판타지다. 너는 어떤 성적 취향이냐?” 등의 질문을 하여 진정인1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 신체적 성희롱 사실 존재

5) 한 여성은 두 번째 만남에서 바다에 갔을 때 바로 모텔에 가자는 본인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그 이후의 만남에선 항상 잡자리를 가졌고, 새로 생긴 모텔이 있으면 연락해서 갔으며, 새로운 성적체위를 했다. 여자 친구가 미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그 여성이 생각난다. 또 다른 소개팅녀는 본인과 첫 경험을 했다.

- 피진정인은 2016. 6. 26.(일) 00:30경 자신의 자동차로 진정인1을 데려다 주던 중 진정인의 숙소 앞에서 진정인1의 손을 잡고 깍지 손으로 고쳐 잡으며 “그립감이 좋다”고 말하는 등 진정인1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진정인1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외부 감사관 의견

○ (성희롱 행위)

-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이 상호 호감 하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진정인1은 피진정인이 결혼할 여자 친구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점,
- 피진정인은 진정인1이 성적 사실에 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경위서 등에도 진정인1이 성적 사실에 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 진정인1이 피진정인의 성관계제안과 스킨십을 거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1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라 할 것입니다.

○ (진정인1의 성적수치심 및 굴욕감)

- 진정인1이 귀 공사와의 재계약⁶⁾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본 진정사건의 언동으로 성적수치심 및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희롱 고충사건(접수번호 2)에 관한 사항

6) ○○○○○○원 ○○○○실-2277(2016.06.13.): 보조인력 연장 운영 계획

가. 감사초점

- 언어적 성희롱 사실 존재 확인
- 신체적 성희롱 사실 존재 확인

나. 관련 규정

-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46조에 따른 성희롱 금지
- 「인사규정」제50조에 따른 징계사유
- 「징계규칙」제8조에 따른 징계의 양정

다. 조사결과

1) 본인 진술

- **(진정인2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진정인2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인만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을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사이였으나 연인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고, 최근 본인에게는 여자 친구가 진정인2에게는 남자 친구가 생기면서 서로 연애를 응원해주고자 제가 먼저 제의하여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 **(사건 경위)**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으며, 예전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고, 술자리에서 행동을 보니까 아직도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잘해보자는 뜻에서 손을 잡았으나 진정인2가 거부하여 손을 놓았다. 진정인2가 도망가듯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식사 중에는 당장 사귄 것 같이 행동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갑자기 차가워진

태도를 보면서 섭섭한 마음에 “본인은 호구가 아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비싼 밥을 사준게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2) 신체적 성희롱 사실 존재

- 피진정인은 2016. 6. 30.(목) 19:00경 ○○ 신시가지에 있는 청담일식에서 진정인2와 식사를 하였다.
- 피진정인은 같은 날 23:00경 식사 후 청담일식 앞에서 진정인2의 손을 갑작스럽게 잡았으며, 진정인2가 손을 뿌리치면서 거절하자 “진정인2는 웃는 게 남자를 설레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등 진정인2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진정인2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 언어적 성희롱 사실 존재

- 피진정인은 진정인2와 함께 카페에 들렀다가 진정인2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자 “본인은 호구가 아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비싼 밥을 사준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진정인2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외부 감사관 의견

○ (성희롱 행위)

-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이 상호 호감 하에 일어난 것이라 주장하나,

진정인2와 피진정인의 상호 호감은 이미 6개월 이전에 종료되었던 점(각자의 연인이 있었던 점, 진정인2는 진정사건 당시 연인과 매우 친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피진정인에게 언급하였던 점), 진정인2는 피진정인이 결혼할 여자 친구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점,

- 피진정인은 진정인2와의 대화가 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2의 대화는 각자의 연인에 대한 것이었던 점,
- 피진정인은 진정인2와 깊은 스킨십이 있던 사이라고 주장하나, 그 역시 피진정인이 호감을 표시하며 일방적으로 한 가벼운 입맞춤(볼 뽀뽀)이었던 점,
- 피진정인이 진정인2에게 호의로 식사를 사 준 후 진정인2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비싼 값의 식사를 하고도 자신에게 성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성적굴욕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한 점,
- 진정인2가 피진정인의 스킨십과 배움을 모두 거절한 점,
- 진정인2가 피진정인이 발송한 문자를 본 후 식사대금의 절반을 입금하며 사과를 요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2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라 할 것입니다.

○ (진정인2의 성적수치심 및 굴욕감)

- 진정인2는 본 진정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⁷⁾을 겪어온 점,

7) 진정인2 문답내용(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원인 없이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려 한참을 고생했으며, 남자에 대하여 믿기도 어려워져 남자 친구와도 헤어졌어요.)

- 진정인2는 피진정인이 발송한 문자를 본 후 식사대금의 절반을 입금하며 사과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본 진정사건의 언동으로 성적수치심 및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사자 의견

- 피진정인은 여직원이 미혼이라는 이유와 상호 협의 하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사회통념 및 상식적으로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며
- 또한, 피진정인은 직장동료와 연인사이를 혼동하는 성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다른 동료들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위 진정사건들 중 피진정인의 말과 행동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성희롱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관련 <별표1>“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2-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4.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2016. 10. 4.(화) 14:00 ~ 15:00
- 장 소: 본사 3층 감사실
- 참석위원: 최○○, 김○○, 이○○, 송○○, 이○○, 김○○, 최○○,

서○○, 김○○, 남○○, 최○○, 김○○(간사)

- 심의결과: (경징계_감봉 3월)

공사 임직원으로 2회에 걸쳐 성희롱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성희롱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에 해당함.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1	본 사 (LX그룹자산재단)	임직원행동강령(성희롱 금지) 위반			1	김○○ 최○○
계	1				1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일련번호	1-1	감사자	김○○, 최○○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징 계 요 구

제 목 임직원행동강령(성희롱 금지) 위반

관 계 기 관 본사 LX기트즈비츠즈단

징계 대상자 연구직 4급 박○○

징 계 종 류 경징계(감봉 3월)

징 계 사유

위 사람은 2016. 1. 4.부터 현재까지 본사 LX기트즈비츠즈단에서 공사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성희롱 금지)에 따라 “임직원은 상호 간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상호 간에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사건(접수번호 1)에 관한 사항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6. 6. 25.(토) 21:00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
○○○○원 기트즈비○기실 보조인력 유○○(퇴사, 이하‘진정인1’이라 한다)와 ○○
신시가지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식사를 하면서 ① 여자 친구가 보내온 카카오톡을
진정인1에게 보여주며, 여자 친구와의 성적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여자 친구와
두 달 동안 헤어졌을 때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의 성관계를 상세하게 묘사⁸⁾
하였고 ② 진정인1에게 “너는 섹스를 못하는 기간 동안 생각나는 남자가 있느냐?
만났던 남자들의 순위가 있지 않냐. 나는 학교 강의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적판타지다. 너는 어떤 성적 취향이냐?” 등의 질문을 하였다.

또한, ③ 자신의 자동차로 진정인1을 데려다 주던 중 진정인1의 숙소 앞에서
진정인1의 손을 잡고 각지 손으로 고쳐 잡으며 “그립감이 좋다”고 말하는 등
진정인1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진정인1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성희롱 고충사건(접수번호 2)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2016. 6. 30.(목) 19:00경 ○○ 신시가지에 있는 청담일식에서 ○○
○○○○원 기트즈비○기실 보조인력 이○○(이하‘진정인2’라 한다)과 식사를
하였으며, ④ 같은 날 23:00경 식사 후 청담일식 앞에서 진정인2의 손을 갑작
스럽게 잡았으며, ⑤ 진정인2가 손을 뿌리치면서 거절하자 “진정인2는 웃는 게
남자를 설레게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8) 한 여성은 두 번째 만남에서 바다에 갔을 때 바로 모텔에 가자는 본인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그 이후의 만남에선 항상 잠
자리를 가졌고, 새로 생긴 모텔이 있으면 연락해서 갔으며, 새로운 성적체위를 했다. 여자 친구가 미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그 여성이 생각한다. 또 다른 소개팅녀는 본인과 첫 경험을 했다.

또한 ⑥ 진정인2와 함께 카페에 들렀다가 진정인2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자 “본인은 호구가 아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비싼 밥을 사준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진정인2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도가 있는 말과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진정인2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6조의 규정을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 제4호9)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스처장)은 본사 LX기트즈비츠즈단 연구직 4급 박○○을 「인사규정」 제50조와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경징계: 감봉 3월)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9)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